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6호

「고속선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54호, 2014.12.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고속선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재검토 기한 재설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안 제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2조제1호, 별표 1)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4조)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안전법」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속선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고속선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전문 7 후단 중 “잇점도”를 “이점도”로 하고, 같은 표 제1장 1.1 후단 중 “적용함으로서”를 “적용함으로써”로 하며, 1.7.3. 전문 중 “도는”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장 2.9.2.1 전문 중 “나비”를 “너비”로 하며, 2.9.2.2 본문 중 “맞 나비”를 “및 너비”로 하고, 같은 표 제7장 7.17.3.10 후단 중 “ffhrn역에”를 “로로구역에”로 하며, 같은 표 제8장 8.1.9 본문 중 “사용년수”를 각각 “사용 연수”로 하며, 같은 표 제10장 10.1.3 후

단 중 “stroage”를 “storage”로 하고, 10.4.2 전단 중 “료이송장치”를 “연료이송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11장 11.3.1 .4 “위험설”을 “위험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장 12.6.1.2 본문 중 “때문”을 “때문”으로 하며, 12.6.8.3 본문 중 “accomodation”을 “accommodation”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장 13.8.3 “부분적으나”를 “부분적으로나”로 하며, 같은 표 제14장 14.13.8 후단 중 “확실히할”을 “확실히 할”으로 하고, 같은 표 부속서 7 1.1 각호 외의 부분 중 “최소 값이다.”를 “최솟값이다.”로 하며, 같은 표 부속서 8 1.2 후단 중 “최대 값”을 “최댓값”으로 하고, 같은 표 부속서 10 3.3 전단 중 “histrory”를 “history”로, “대표값”을 “대표값”으로 하며, 같은 표 부속서 11 5 본문 외의 부분 중 “제조년월”을 “제조연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u>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의한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times \nabla^{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m^3)을 말한다.</p> <p>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다음 <u>각목</u>의 선박 가.·나. (생략)</p> <p>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 <u>각목</u>의 요건에 적합한 고속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이상인 선박</p> <p>제4조(재검토기한) 「<u>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p>	<p>제1조(목적) ----- 「<u>선박안전법</u>」 제26조 및 「<u>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u>」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 -----.</p> <p>제2조(적용범위) ----- -----. ----- ----- ----- -----.</p> <p>1. ----- ----- <u>각 목</u>----- 가.·나. (현행과 같음)</p> <p>2. ----- ----- <u>각 목</u>----- -----</p> <p>제4조(재검토기한) <u>해양수산부장관</u>은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p>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조문신
설 2009.5.29, 개정 2012. 7. 11,
개정 2014. 12. 23.>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